# 과원규모화(융자)

세부사업명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세독	+	융자금		
내역사업명	과원규모화				<b>예신</b> (백만	_	37,520		
사업목적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과원 규모화를 위한 융자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촌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지원한도	과원매매 : 제곱미터(m²)당 <u>20,000원</u> (과수목 포함)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과수농가 : 5ha, 농업법인 : 10ha								
재원구성(%)	국고	0	지방비	0	융자	100	자부담	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연도별 합계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42,900	39,300		37,520	140,700			
계획			36,000	32,40	0	32,000	120	120,000	
	- 임대		6,900	6,900		5,520	20,700		
Cho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난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부 장 김형선		044-201-2255		

남당기관	남당과	남당사	연탁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수신부	부 장 김형섭 차 장 양진승 대 리 이정화	061-338-5888		
신청시기 수시(연중 가	수시(연중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b>관련자료</b> 농림사업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I /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대상농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 현황기준)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과원매매사업

-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u>2020년도의 경우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u>)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 하되, 소규모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
      -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기준(이하 같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 법인은 5ha이상
    -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2) 지원 제외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 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 <u>본인이</u>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 (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한 경우와 종전면적 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 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나. 과원임대차사업

- (1)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과 같음
-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 3. 지원 대상농지

## 가. 과원매매사업

- (1) 매입대상과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 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

#### (2) 매입 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 폐업지원 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 (3)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고 채권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원자가 고령 은퇴 또는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자의 과원
  -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인 이상의 공유과원으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과원.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 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 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 나. 과원임대차사업

- (1) 임차 대상과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 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 ·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임차
-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 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비용은 임대자(과원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임차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상환이 완료되고, 「농지법」 제23조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는 과원
- 공사에서 임차한 과원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만료전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원.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 가능
- 이하 과원매매사업 매입 제외 과원과 같음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 5. 지원형태

- 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기준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 기존 소유규모, 임차: 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과원매매, 임대차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 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m²)당 20,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나. 지원방법

#### (1) 과원매매사업

####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친환경·GAP인증 및 계약재배 농가, 무병묘 관 찰포 농가
  -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참여조직 등)와 공동선별·공동계산 등의 방법으로 출하실적이 있고, 출하약정을 체결한 과수농가
  -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경영체
  - 2030세대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작은 자
  - 배(신고품종 한정)농가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자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화한 자
  - 자력확대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농업계 학교 졸업자 등의 순위로 한다.

- (나) 공사 매입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과원(과수목 포함)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매도자가 부담)
    - 과원가격 현지조사 시에는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
  -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잔금지급
- (다) 공사 매도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경매 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 매매가격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 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 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 한 경우 지원과원 외에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가능

-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분할 납부
      - 농업인 납부기간 = 75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 농업법인 납부기간: 20년
      -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 여기간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납부연기
  -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과원매매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1년간 납부 연기. 다만, 지원받은 필지의 피해가 있을 때 신청가능
    - 자연재해로 인한 납부연기
      - ①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정보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병충해로 인한 납부연기
      - ① 병충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
      - ② 피해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 원관련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해인정 승인 요청
      -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첨 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④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란 피해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과수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한 피해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 면적비(피해면적×피해율)을 말함
  - \* 과수 유목은 피해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유실·매몰피해시 피해면적에 포함

#### (2) 과원임대차사업

-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준용
- (나) 공사가 과원 임차시 임차료결정, 임차계약체결 및 임차료지급 방법 등
  - 임차기간 : 5~10년
  -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 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임차계약의 체결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 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 ①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②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서 징구 불가
    - \* 당해 농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는 연대 보증을 할 수 없음
  - 공사에 과원을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부과되는 부과금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과 융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다) 공사가 임대하는 과원의 임대료결정,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납부 방법 등
  -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 임대계약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 거나 보증서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서 징구는 임차계약 시와 같음

- 임차료의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 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신청 한 때에는 임차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 신청절차 및 피해율 적용기준은 과원매매자금 납부연기 시와 같음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 7.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20년도의 경우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영규모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 기준, 임차농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만, 만 61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과원규모화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가는 영 농승계자 없이 64세까지 신청 가능)
    - \*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또는 이장 등의 확인

##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②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①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 나. 신청자격 제한

- 1)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사원, 주주, 조합원
- 2)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3)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이 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 4)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 (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5) 농가단위로 쌀과 밭작물과 중복되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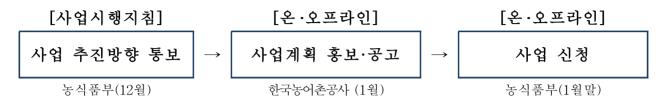
# 다. 대상자 선정

- 추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선정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전 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갈음
- \*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Ⅱ / 사업추진체계

# ① 과원규모화사업

## 1. 사업신청단계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까지)

###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 다.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 2. 사업자 선정단계

# 가.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가.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 사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 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1월말)

#### ○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 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업 내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공사는 과수농가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까지)
- 업무지침의 운영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 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4. 자금배정단계

#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관인 공사에 자금배정 및 시달

#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사는 각 지역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지역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해당 과수농가에 지급

### ※ 사업비정산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과원규모화사업"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익년도 1월말)

## 5. 이행점검단계

## 가. 사후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 1) 과수농가 관리

- 가) 관리기간: 자금지원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매년 12월말까지)

#### 다) 자격 승계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자격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 승계신청
- 사망. 질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64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과원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원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60세 이하 이어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원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

#### 라) 계획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지원받은 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지원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 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2) 지원과원 관리

- 가)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轉業)여부
  - 지원된 과원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 지원받은 당시 과수품목 이외의 타 작목 재배 여부
  - \* 지원당시 과수목으로 품종갱신은 허용
  - 경영규모 축소여부
- 나)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을 갖추고 동일세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지원 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을 상속 받은 자가 당해 과원을 전매하는 경우
- 지원받은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공사의 과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전매하는 경우
- 세대주나 동거가족의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자녀 결혼과 학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소요로 인해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과원 경영규모 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법」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제35조에 따라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
- 다) 공공용지 편입 및 농지전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로 과원을 전매하거나 과원을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 구입하여야 함
    - 해당면적 이상 농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하고,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 또는 당해 과원 회수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태 현지점검
  - 공사 사후관리 이행사항 점검 등

# 《제재》

- 가. 과수농가 관리
- (1) 계약해제·해지 사유
  -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 행방불명 등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사유에서 제외
  -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③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 ④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 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⑤ 농지전용 동의를 받고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하고, 그 해당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⑥ 세대주나 동거가족의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비 마련 또는 학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소요로 인해 공사의 전매동의를 받아 전매하고, 그 해당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지원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 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때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 (2)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의 회수
  - 공사 지사장은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 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과수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 다만,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 나. 지원과원 관리

- (1)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공사에서 정한 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대장 또는 P/G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도과원 : 지원금 또는 당해과원 회수
  - 임대과원 : 임대차계약 해지
- (2) 회수과원 가격결정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미상환 잔액을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 수납한 자부담금과 할부원금에서 다음의 이자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반자에게 반환
  - 공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의 미 상환 이자(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제세공과금
- (2)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1%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1%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다. 기타 행정사항

○ 농림축산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은 공사가 지원한 과수농가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정보 확인 등에 적극 협조
- 공사 사장은 지원과원에 대한 사후관리상황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10월 31일까지)

##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가. 사업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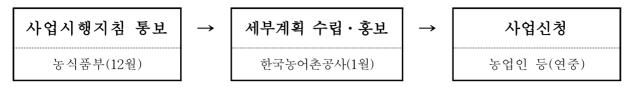
- 1) 원 칙
- 매년 과수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20년까지 적정 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5천호를 육성하여 전체 과수 생산량의 6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 2) 사업평가실시 절차
- 평가대상 : 전체 과수지원 농가
- 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공사 사장은 과수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익년도 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 나.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적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예산 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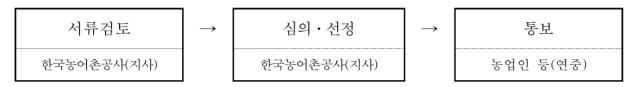
# ② 전업농육성

## 1. 사업신청단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까지 통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한국농어촌공사

#### 가. 경영지도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기 구축된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FBIMS)의 쌀전업농관리 프로그램을 보완 활용
- 년 1회 이상 정부의 농업경영체 등록 D/B 화일을 받아 과수전업농의 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경영규모가 0.5ha(시설 0.3ha)이상인 농가 중 적격한 농가를 선발하여 육성후보군 조성 및 D/B 구축
- · 위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통지하여 과수전업농 신청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발된 전업농육성대상자를 후보군 조성
- 지원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 나. 업무지침의 운영

○ 전업농육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운영

## 4.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 가. 관리기간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년도부터 자격취소 시까지
-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
  - 점검결과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다. 자격 승계 승인

-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병 등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나 농업후계인력에게 자격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승계 승인 여부 결정
-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영농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승계 받는 배우자·형제자매는 만 60세 이하에 한함)
-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영농 기반 전체 승계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 라. 행정사항

-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 자금회수현황을 장관에게 보고(익년도 1월말)
- 사업 취소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까지 통보

# 전업농 등 지원대상자

## 가. 사업계획의 변경 통지 등

-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하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 통지
- 댐·저수지, 산업단지·택지조성,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나. 자격 승계 신청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승계 신청
  -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56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 가.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시장·군수) 및 기술지도(농업기술센터)
- 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확인 등에 적극 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및 현황 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및 지도강화

## 《제재 및 처벌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가. 사업취소 사유

- (1)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2) 전업농 지원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4) 파산·금치산 선고 등 중대한 신용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5) 농업이외의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을 하는 경우로 공사 지사장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외
- (6) 소유 과원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전용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축소 익년도 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되, 전업농 육성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
  -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 규모가 축소된 경우
  -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③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가 주 작목 이외의 농지를 매도 임대 전용하는 경우
  -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 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⑥ 지원 후 8년이 경과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및 지원받지 않은 소유농지를 불가피한 사유(전매동의 사유인 경우에 한함)로 매도하여 경영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 (7) 공사 지원농지를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취소
  - (8) 기타 공사 지사장이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 나.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 (1)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농지)을 상환(반납)토록 통보
- (2)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사유 발생 확인 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 자격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 다만, 신병, 사망 등으로 사업승계 불가 및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가. 평가요령

- (1) 평가주관: 농림축산식품부(협조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2) 평가기간 및 대상 : 익년도 1월~2월, 전체 과수전업농
- (3) 평가기준

성과지표	배점	측 정 수 식	의 미
①과수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주지표)	70점	과수전업농 경영면적/ 전체 과수재배면적	'20년까지 전체 과수재배면적 대비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50%)의 달성도 측정
②과수 전업농 호당 경영 면적 (ha, 부지표)	30점	과수전업농 경영면적/전국 과수농가 호당평균경영면적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과수 전업농의 호당 경영면적 달성도 측정

#### 나. 평가절차

- (1) 공사는 매년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요청(전년도 12월)
- (2)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1월)
- (3)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 《환 류》

○ 과수전업농 육성목표 점검 및 중장기 과수전업농육성계획에 반영(익년도 4월)

#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 (2) 신청자격
  - 농지매도·임대: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과수농가 등
  - 농지매입·임차 : 과수농가, 농업법인
- (3) 사업절차
  -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지원대 상자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4) 구비서류
  -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과원임대신청서, 과원임차신청서 중 해당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루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 첨부서류 : 해당신청서의 아래 참조
- (5) 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